

#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입주자 모집공고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 주요정보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3.05.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부산광역시 1년 미만 계속 거주자 및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5.31.(금)	24.06.10.(월)	24.06.11.(화)	24.06.12.(수)	24.06.18.(화)	24.06.21.(금)~24.06.28.(금)	24.07.01.(월)~24.07.03.(수)

## I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 6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제1호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www.lottecastle.co.kr/APT/AT00413/main/index.do](http://www.lottecastle.co.kr/APT/AT00413/main/index.do))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될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습니다.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합니다.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턴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반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APT / 오피스텔 / 생활숙박시설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APT무순위 / 임의공급 / 취소후재공급(계약취소주택)	○				X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합니다.

## II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31.(금)**입니다.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1년 이상 거주자가(2023.05.31.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4.06.10.(월)	24.06.11.(화)	24.06.12.(수)	24.06.18.(화)	24.06.21.(금)~24.06.28.(금)	24.07.01.(월)~24.07.03.(수)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li> <li>■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C·모바일) 청약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9번지, 2층)</li> </ul>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 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 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별표3]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Ⅲ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건축과-18104 (2024. 05. 3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64-3번지 일원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28층 10개동 총 903세대 중 일반분양 489세대  
[특별공급 233세대(기관추천 45세대, 다자녀가구 48세대, 신혼부부 84세대, 노부모부양 14세대, 생애최초 4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7년 03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sup>2</sup>,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sup>2</sup> )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4000234	01	059.9301A	59A-1	59.9301	22.9217	82.8518	48.3528	131.2046	28.3338	162	212	21	21	38	6	19	105	107	14
			59A-2	59.9301	22.3275	82.2576	56.3824	138.6400	34.5236	50									
	02	059.8724B	59B	59.8724	24.9826	84.8550	48.3062	133.1612	28.3065	16	16	1	1	3	0	2	7	9	2
				84A-1	84.9821	27.3215	112.3036	68.5652	180.8688	40.1779	34	71	7	7	13	2	6	35	36
	84A-2	84.9821	29.0179	114.0000	79.9514	193.9514	48.9552	37											
	04	084.9732B	84B-1	84.9732	28.5280	113.5012	68.5580	182.0593	40.1737	130	164	16	16	30	5	15	82	82	8
				84B-2	84.9732	29.3305	114.3037	79.9430	194.2467	48.9501									
	05	110.5210	110	110.5210	31.8557	142.3767	89.1705	231.5471	52.2523	26	26	0	3	0	1	0	4	22	4
	합 계										489	45	48	84	14	42	233	256	37

■ 주택형 표시 안내

모집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59.9301A		059.8724B	084.9821A		084.9732B		110.5210
약식표기	59A-1	59A-2	59B	84A-1	84A-2	84B-1	84B-2	110

- ※ 청약 신청시 동·호수 배정은 1단지, 2단지(약식표기 “타입-1”은 1단지, “타입-2”은 2단지를 칭함) 중에서 임의배정 되오니 단지 및 동·호배치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주택규모 표기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m<sup>2</sup>)로 표기하였습니다.(m<sup>2</sup>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m<sup>2</sup> × 0.3025 또는 m<sup>2</sup> ÷ 3.3058)
-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위 공급대상의 '주택형'으로 청약하여야 합니다.
- ※ 일반 공급세대수는 특별공급 청약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특별공급 청약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공동현관, 벽체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주민공동시설, 전기/기계실, 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을 의미합니다.
- ※ 최하층이라 함은 각호의 최저층을 말하며 1층 또는 2층이 필로티인 경우 필로티 바로 위층을 최저층으로 합니다.
- ※ 상기 세대별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계약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대지지분은 소수점 5째자리에서 버림 방식으로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 하여 면적 합산(계약면적 등), 확정측량 등의 과정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시 설계 등 인·허가 변경, 측량 및 지적 정리 등에 따른 대지면적 확정,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한 경우 분양 당시의 분양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또는 세대별 각종 면적, 대지지분의 5% 이내의 증감,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 내의 증감, 지적법상 축척 변경 등으로 인한 증감 시에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 대지지분은 실별 전용면적 비율에 의거 균등 배분하였으며, 세대별 전용면적, 공용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와 실측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 등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소수점이하 면적 변동에 대하여는 정산하지 않습니다.
- ※ 견본주택 및 분양안내문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 불가합니다
-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sup>2</sup>, 원)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약식 표기	공급 세대 수	동·라인	층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 (60%)						잔금(30%) 입주지정일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소계	계약시	계약 후 30일 이내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2025.02.20	2025.06.20	2025.10.20	2026.02.20	2026.06.19	2026.10.20		
059.9301A	59A-1	162	101동 1,2,3,5호 106동1,2,3,5호	1층	4	220,293,000	376,707,000	-	597,000,000	10,000,000	4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59,700,000	179,100,000	
				2층	8	222,876,000	381,124,000	-	604,000,000	10,000,000	5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60,400,000	181,200,000
				3-4층	16	227,673,000	389,327,000	-	617,000,000	10,000,000	5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61,700,000	185,100,000
				5-9층	33	232,470,000	397,530,000	-	630,000,000	10,000,000	5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63,000,000	189,000,000
				10-19층	51	237,267,000	405,733,000	-	643,000,000	10,000,000	5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64,300,000	192,900,000
				20층 이상	13	244,647,000	418,353,000	-	663,000,000	10,000,000	5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198,900,000
			102동 1,2호	1층	1	219,186,000	374,814,000	-	594,000,000	10,000,000	4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59,400,000	178,200,000
				2층	2	221,400,000	378,600,000	-	600,000,000	10,000,000	5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60,000,000	180,000,000
				3-4층	4	226,197,000	386,803,000	-	613,000,000	10,000,000	5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61,300,000	183,900,000
				5-9층	6	231,363,000	395,637,000	-	627,000,000	10,000,000	5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62,700,000	188,100,000
				10-19층	12	236,160,000	403,840,000	-	640,000,000	10,000,000	5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64,000,000	192,000,000
				20층 이상	12	243,540,000	416,460,000	-	660,000,000	10,000,000	5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198,000,000

59A-2	59A-2	50	201동 1,2호	1층	1	212,544,000	363,456,000	-	576,000,000	10,000,000	4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57,600,000	172,800,000		
				2층	2	215,127,000	367,873,000	-	583,000,000	10,000,000	4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74,900,000
				3-4층	4	219,924,000	376,076,000	-	596,000,000	10,000,000	4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78,800,000
				5-9층	8	224,721,000	384,279,000	-	609,000,000	10,000,000	5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82,700,000
				10~19층	9	229,518,000	392,482,000	-	622,000,000	10,000,000	5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62,200,000	186,600,000
			202동 4,5호	1층	1	207,747,000	355,253,000	-	563,000,000	10,000,000	4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56,300,000	168,900,000
				2층	2	210,330,000	359,670,000	-	570,000,000	10,000,000	4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57,000,000	171,000,000
				3-4층	4	215,127,000	367,873,000	-	583,000,000	10,000,000	4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58,300,000	174,900,000
				5-9층	5	219,924,000	376,076,000	-	596,000,000	10,000,000	4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59,600,000	178,800,000
				10-19층	12	224,721,000	384,279,000	-	609,000,000	10,000,000	5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60,900,000	182,700,000
20층 이상	2	232,101,000	396,899,000	-	629,000,000	10,000,000	5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62,900,000	188,700,000				
059.8724B	59B	16	101동 4호 106동 4호	1층	2	212,913,000	364,087,000	-	577,000,000	10,000,000	4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57,700,000	173,100,000		
				2층	2	215,496,000	368,504,000	-	584,000,000	10,000,000	4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58,400,000	175,200,000	
				3-4층	4	220,662,000	377,338,000	-	598,000,000	10,000,000	4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59,800,000	179,400,000	
				5-9층	3	225,459,000	385,541,000	-	611,000,000	10,000,000	5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61,100,000	183,300,000	
				10-19층	2	230,625,000	394,375,000	-	625,000,000	10,000,000	5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187,500,000	
				20층 이상	3	238,005,000	406,995,000	-	645,000,000	10,000,000	5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64,500,000	193,500,000	
084.9821A	84A-1	34	104동 1,2호	1층	1	308,484,000	527,516,000	-	836,000,000	10,000,000	7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50,800,000		
				2층	2	311,805,000	533,195,000	-	845,000,000	10,000,000	7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53,500,000	
				3-4층	4	318,447,000	544,553,000	-	863,000,000	10,000,000	7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258,900,000	
				5-9층	3	325,089,000	555,911,000	-	881,000,000	10,000,000	7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264,300,000	
				10-19층	5	331,731,000	567,269,000	-	899,000,000	10,000,000	7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269,700,000	
			20층 이상	5	341,694,000	584,306,000	-	926,000,000	10,000,000	82,600,000	92,600,000	92,600,000	92,600,000	92,600,000	92,600,000	92,600,000	277,800,000		
			105동 4,5호	2층	2	308,484,000	527,516,000	-	836,000,000	10,000,000	7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50,800,000
	3-4층	4		315,126,000	538,874,000	-	854,000,000	10,000,000	7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256,200,000			
	5-9층	3		321,768,000	550,232,000	-	872,000,000	10,000,000	7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87,200,000	261,600,000			
	10-19층	4		328,410,000	561,590,000	-	890,000,000	10,000,000	7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267,000,000			
	20층 이상	1		338,373,000	578,627,000	-	917,000,000	10,000,000	8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91,700,000	275,100,000			
	84A-2	37	201동 3,4호 202동 1호 203동 1,2호	1층	1	297,783,000	509,217,000	-	807,000,000	10,000,000	7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80,700,000	242,100,000	
				2층	5	301,473,000	515,527,000	-	817,000,000	10,000,000	7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81,700,000	245,100,000	
				3-4층	10	308,115,000	526,885,000	-	835,000,000	10,000,000	7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83,500,000	250,500,000	
5-9층				9	314,757,000	538,243,000	-	853,000,000	10,000,000	7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85,300,000	255,900,000		
10-19층				10	321,399,000	549,601,000	-	871,000,000	10,000,000	7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87,100,000	261,300,000		
20층 이상	2	331,731,000	567,269,000	-	899,000,000	10,000,000	7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89,900,000	269,700,000					
084.9732B	84B-1	130	102동 3,4호	1층	2	294,535,800	503,664,200	-	798,200,000	10,000,000	6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79,820,000	239,460,000		
				2층	2	298,152,000	509,848,000	-	808,000,000	10,000,000	7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80,800,000	242,400,000	
				3-4층	4	305,163,000	521,837,000	-	827,000,000	10,000,000	7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82,700,000	248,100,000	
				5-9층	9	311,805,000	533,195,000	-	845,000,000	10,000,000	7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84,500,000	253,500,000	
				10-19층	16	318,447,000	544,553,000	-	863,000,000	10,000,000	7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86,300,000	258,900,000	
				20층 이상	13	328,410,000	561,590,000	-	890,000,000	10,000,000	7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89,000,000	267,000,000	
			104동 3,4호	1층	1	291,214,800	497,985,200	-	789,200,000	10,000,000	6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78,920,000	236,760,000	
				2층	2	294,831,000	504,169,000	-	799,000,000	10,000,000	6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239,700,000	
				3-4층	4	301,842,000	516,158,000	-	818,000,000	10,000,000	7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245,400,000	
				5-9층	10	308,484,000	527,516,000	-	836,000,000	10,000,000	7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50,800,000	
				10-19층	14	315,126,000	538,874,000	-	854,000,000	10,000,000	7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256,200,000	
				20층 이상	13	325,089,000	555,911,000	-	881,000,000	10,000,000	7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264,300,000	

84B-2	34	105동 2,3호	1층	2	291,196,350	497,953,650	-	789,150,000	10,000,000	68,915,000	78,915,000	78,915,000	78,915,000	78,915,000	78,915,000	78,915,000	236,745,000		
			2층	2	294,831,000	504,169,000	-	799,000,000	10,000,000	6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79,900,000	239,700,000	
			3-4층	4	301,842,000	516,158,000	-	818,000,000	10,000,000	7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81,800,000	245,400,000	
			5-9층	9	308,484,000	527,516,000	-	836,000,000	10,000,000	7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83,600,000	250,800,000	
			10-19층	17	315,126,000	538,874,000	-	854,000,000	10,000,000	7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85,400,000	256,200,000	
			20층 이상	6	325,089,000	555,911,000	-	881,000,000	10,000,000	7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88,100,000	264,300,000	
	34	202동 2,3호	1층	1	288,225,900	492,874,100	-	781,100,000	10,000,000	68,110,000	78,110,000	78,110,000	78,110,000	78,110,000	78,110,000	78,110,000	78,110,000	234,330,000	
			2층	2	291,879,000	499,121,000	-	791,000,000	10,000,000	6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79,100,000	237,300,000	
			3-4층	4	298,890,000	511,110,000	-	810,000,000	10,000,000	7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81,000,000	243,000,000	
			5-9층	8	305,532,000	522,468,000	-	828,000,000	10,000,000	7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82,800,000	248,400,000	
			10-19층	15	312,174,000	533,826,000	-	846,000,000	10,000,000	7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84,600,000	253,800,000	
			20층 이상	4	322,506,000	551,494,000	-	874,000,000	10,000,000	7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87,400,000	262,200,000	
110.5210	110	26	103동 1,2호	1층	2	399,258,000	620,674,546	62,067,454	1,082,000,000	10,000,000	9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324,600,000	
				2층	2	403,686,000	627,558,182	62,755,818	1,094,000,000	10,000,000	9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109,400,000	328,200,000
				3-4층	4	412,173,000	640,751,819	64,075,181	1,117,000,000	10,000,000	10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111,700,000	335,100,000
				5-9층	2	420,291,000	653,371,819	65,337,181	1,139,000,000	10,000,000	10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113,900,000	341,700,000
				10-19층	3	428,778,000	666,565,455	66,656,545	1,162,000,000	10,000,000	10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116,200,000	348,600,000
				20층 이상	2	441,324,000	686,069,091	68,606,909	1,196,000,000	10,000,000	109,600,000	119,600,000	119,600,000	119,600,000	119,600,000	119,600,000	119,600,000	119,600,000	358,800,000
		26	104동 5호 105동 1호	1층	2	395,199,000	614,364,546	61,436,454	1,071,000,000	10,000,000	9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107,100,000	321,300,000
				2층	2	399,258,000	620,674,546	62,067,454	1,082,000,000	10,000,000	9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108,200,000	324,600,000
				3-4층	3	407,745,000	633,868,182	63,386,818	1,105,000,000	10,000,000	10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110,500,000	331,500,000
				5-9층	2	416,232,000	647,061,819	64,706,181	1,128,000,000	10,000,000	10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112,800,000	338,400,000
				10-19층	1	424,719,000	660,255,455	66,025,545	1,151,000,000	10,000,000	10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115,100,000	345,300,000
				20층 이상	1	437,265,000	679,759,091	67,975,909	1,185,000,000	10,000,000	10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118,500,000	355,500,000

## ■ 공통사항

- 상기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단지별,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을 기준으로 청약 순위별 조건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청약홈)에서 동·호수를 주첨하여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동 규정에 의거 중도금 납부 일자는 건축공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별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향별, 단지별 등의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은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본 아파트 110㎡는 부가가치세 적용대상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구법상의 등록세 통합)가 미포함된 가격입니다. (추후 취득세 산정 시 발코니확장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합산되어 산정됨)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확장 비용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발코니확장 및 유상옵션의 계약은 분양계약 시 또는 분양계약 이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승강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실·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공용면적 등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입주중 발급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료 납부 시 토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료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부대복리시설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세대별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이하 면적변경에 대해서는 정산금액 없음)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내에서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정산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단,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 범위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상호정산 또는 부대시설면적 조정(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등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은 사용승인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 포함)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총 공급대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승인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지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일정은 사전에 계약자 본인이 숙지하고 청약 및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계약자 본인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 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3항제27호 규정 및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에 의하여 사전방문 행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 시 관리주체가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으며, 선수관리금 금원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이에 따른 징수 및 사용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본 아파트 계약체결시 계약자의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 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거래당사자는 30일 이내에 소재지 주무관청으로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IV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주택형)		059.9301A	059.8724B	084.9821A	084.9732B	110.5210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3	-	1	3	-	7	
	장기복무 제대군인	3	-	1	3	-	7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3	-	1	3	-	7	
	중소기업 근로자	3	-	1	3	-	7	
	장애인	부산광역시	5	1	1	2	-	9
		울산광역시	2	-	1	1	-	4
경상남도		2	-	1	1	-	4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21	1	7	16	3	48	
신혼부부 특별공급		38	3	13	30	-	8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6	-	2	5	1	14	
생애최초 특별공급		19	2	6	15	-	42	
<b>합 계</b>		<b>105</b>	<b>7</b>	<b>35</b>	<b>82</b>	<b>4</b>	<b>233</b>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혼인 전 특별공급 당첨이력은 배제합니다.</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 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p>				
	구분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광역시 및 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IV-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5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li> </ul>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유공자(장기복무 제대군인 포함) : 부산지방보훈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li> <li>■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li> <li>■ 중소기업 근로자 :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li> <li>■ 장애인 :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울산광역시 장애인복지과 / 경상남도 장애인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li> <li>■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li> <li>■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ul>

**IV-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48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함</li> </ul> </li> <li>■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li> </ul> </li> <li>■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li> </ul>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li> <li>■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li> </ul>

■ ②배점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시·도(부산광역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외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				

IV-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8% 범위 : 8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p> <p>※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p> <p>■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p>

	<p>■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p>																		
<p><b>당첨자 선정방법</b></p>	<p>■ <b>당첨자 선정 순서</b>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b>소득구분</b></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1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3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p>■ ②<b>순위</b></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td> </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자녀가 없는 분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분																		
<p>■ ③<b>지역</b>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p>																			
<p><b>비고</b></p>	<p>■ <b>자녀기준</b></p> <p>-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p> <p>*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p> <p>-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p> <p>-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5.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004,509원	~8,248,467원	~8,775,071원	~9,563,282원	~10,351,493원	~11,139,704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405,411원	~9,898,160원	~10,530,085원	~11,475,938원	~12,421,792원	~13,367,64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004,510원~ 9,806,313원	8,248,468원~ 11,547,854원	8,775,072원~ 12,285,099원	9,563,283원~ 13,388,595원	10,351,494원~ 14,492,090원	11,139,705원~ 15,595,586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405,412원~ 11,207,214원	9,898,161원~ 13,197,547원	10,530,086원~ 14,040,114원	11,475,939원~ 15,301,251원	12,421,793원~ 16,562,389원	13,367,64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9,806,314원~	11,547,855원~	12,285,100원~	13,388,596원~	14,492,091원~	15,595,58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b>■ 자산기준</b>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업」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b>IV-4</b>	<b>노부모부양 특별공급</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14세대
-------------	--	----------------------

구분	내용
대상자	<b>■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b>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b>■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b> <b>■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b>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b>■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b> <b>■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b>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

■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

비고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IV-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42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 거주하거나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이력은 배제합니다.</p>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
  -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
  -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4.05.31.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전년도 소득

- 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105,862원	~10,723,007원	~11,407,592원	~12,432,267원	~13,456,941원	~14,481,615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105,863원~ 11,207,214원	10,723,008원~ 13,197,547원	11,407,593원~ 14,040,114원	12,432,268원~ 15,301,251원	13,456,942원~ 16,562,389원	14,481,616원~ 17,823,526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1인 가구	160% 이하	~11,207,214원	~13,197,547원	~14,040,114원	~15,301,251원	~16,562,389원	~17,823,526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207,215원~	13,197,548원~	14,040,115원~	15,301,252원~	16,562,390원~	17,823,527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88,211)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p>*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p> <p>*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축산업」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p> <p>*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p> <p>*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p>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V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구분	내용																							
대상자	<p>■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산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p> <p>■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p> <p>- 1순위</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p> <p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p>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광역시 및 특별시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광역시 및 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광역시 및 특별시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울산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경상남도)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부산광역시 1년 미만 거주자 또는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거주자)

■ **②가점**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	100%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p>※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 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초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315 826 519 882">단계</th> <th data-bbox="519 826 1048 882">비율</th> <th data-bbox="1048 826 2112 882">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315 882 519 938">1단계</td> <td data-bbox="519 882 1048 938">추첨제 물량의 75%</td> <td data-bbox="1048 882 2112 938">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 data-bbox="315 938 519 994">2단계</td> <td data-bbox="519 938 1048 994">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48 938 2112 994">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 data-bbox="315 994 519 1042">3단계</td> <td data-bbox="519 994 1048 1042">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 data-bbox="1048 994 2112 1042">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p>													

## ■ 청약신청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장소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4.06.10.(월) 09:00~17:30 *현장접수 : 당사 견본주택 (10:00~14:00) ※현장접수는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모바일 : 청약홈 스마트폰앱</li> <li>사업주체 견본주택(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취약자에 한함)</li> <li>-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9번지 2층</li> </ul>
일반공급	1순위	24.06.11.(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li> <li>- PC : www.applyhome.co.kr</li> <li>- 모바일 : 청약홈 스마트폰앱</li> <li>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li> </ul>
	2순위	24.06.12.(수) 09:00~17:30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당사 견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li> <li>-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li> <li>-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li> </ul>
---------	--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b>인감증명 방식</b>	<b>본인서명확인 방식</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li> <li>-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li> <li>-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li> <li>-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li> <li>*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li> </ul>
<p>※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p> <p>※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p> <p>※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p> <p>※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p> <p>■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p>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li> <li>-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li> <li>- <b>이용방법</b>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li> </ul>	
(민영주택) 공고단지 청약연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li> <li>-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li> <li>- <b>이용방법</b>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li> </ul>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조회방법</b>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li> <li>- <b>조회기간</b> : 2024.06.18.(화) ~ 2024.06.27.(목) (10일간)</li> <li>-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li> <li>-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li> <li>-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li> </ul>
	문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제공일시</b> : 2024.06.18.(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li> <li>- <b>제공대상</b>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li> <li>-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ul>

**Ⅶ**

**당첨자 발표 및 사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제출**

**■ 당첨자 발표일정**

구 분	당첨자 발표일	확인방법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1순위, 2순위) 당첨자	24.06.18.(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당첨자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명단은 개별통지 하지 않으며, 당첨 여부는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자격확인서류 제출일정 안내**

구 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	장 소
당첨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24.06.21.(금)~24.06.28.(금) (10:00~17:00) 8일간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얼 건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9번지, 2층)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류 제출은 건본주택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합니다. (대리인 신청시 아래 구비서류 내용 중 대리인 서류 추가필요 합니다.)
- 당첨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및 예비입주자는 지정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신청내역 등 적격 자격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기간 내(계약 체결 이전)제출하여야 합니다.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 불가함)
- 소명자료 제출과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예정으로 청약신청자가 청약 신청 시 잘못된 정보 기재(연락처, 주소 등)로 해당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통보를 받거나 부적격 의심 사유가 있어 소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소명에 필요한 서류를 소명기간 내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은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 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 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서류 제출기간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송받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만 30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일반공급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만 19세 이전 혼인하여 무주택 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해당)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견본주택 방문청약 접수시 제출(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7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국내기업·기관·소속해에 소속되어 해외에 파견된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재직증명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기관추천 특별공급	○	특별공급 대상자 증명서류	본인	• 해당기관의 추천서 (기관추천 명단 확인으로 대체)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신청자 본인 점수산정 및 인적사항 기록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만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미혼 확인)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존속포함)이 모집공고일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등재되어 3세대 이상 구성 점수를 받 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배우자 유무 및 세대분리 여부 확인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공급 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	• 당사 견본주택 비치 [혼인신고일(7년 이내), 자녀수(태아 포함), 월평균소득 확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3> 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주민등록표 상 피부양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의 부양기간 내 해외거주기간 확인 필수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증명 (기록대조 시작일 : 생년월일 / 기록대조 종료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b>&lt;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gt;</b>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 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생애최초 자격 요건 확인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 조회기간 : 건강보험가입 최초일부터 ~ 입주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전체기간 설정하여 발급
	○		소득증빙서류 (<표1> 참조)	본인 및 만19세이상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 입증 서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표2> 참조)	본인	• 청약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직계존속	•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 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성명,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분)이 동일 등본상 만18세 이상 자녀를 미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공개", "상세"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임신진단서 이외 서류 인정 불가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기관명과 임신 주 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임신의 경우)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	비사업자 확인각서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견본주택에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본인 및 만 19세이상 세대원	• 비사업자 확인각서 제출 시 "소득사실 없음" 확인 가능해야 함 ※ 전년도 소득 없는자에 한함
	○	부동산소유현황 (<표3>참조)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 • "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직인 날인이 필요한 서류 중 직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및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표1>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입증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을 표시해야 하며 휴직유형 명시-예시 :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원본 : 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③ 해당직장 사업자등록증(사본)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② 재직증명서(원본 : 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또는 공고일 이전 (국민연금 미가입자) 최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 모집공고일 이전 최근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③ 사업자등록증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세무서 ②,③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③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기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또는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① 세무서/해당직장

<p><b>무직자</b></p>	<p>① 사실증명(신고사실 없음)          ②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 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p>	<p>① 세무서          ② 주택전시관</p>
<p><b>기타 (근로자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세대 한함)</b></p>	<p>①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의 지급 결정통지서(출산휴가 기간 동안 지급된 급여내역)          ②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징구 서류[재직증명서 또는 별첨서식을 통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명시]</p>	<p>①,② 해당직장,          거주지관할구역          고용센터 등</p>

▣ <표2>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입증 제출서류

서류구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p><b>자격 입증서류</b></p>	<p><b>근로자</b></p>	<p>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p>	<p>① 해당직장            ② 국민건강보험공단</p>
	<p><b>자영업자</b></p>	<p>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p>	
	<p><b>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b></p>	<p>①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p>	
<p><b>소득세 납부 입증서류</b></p>	<p><b>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b></p>	<p>•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직인날인)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p>	<p>① 세무서            ②,③ 해당직장/세무서</p>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재직증명서 제출 대상자 중 소득산정 기간 중에 휴직을 했던 분은 휴직기간이 표시되도록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기타 예외사항(신혼부부 특별공급 운용지침 별표 3)

1.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 확인서와 의료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 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2.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할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의 소득금액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4.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5.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표3>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보유기준 및 자산입증 제출서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자·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li>-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li> </ul>												

※자산입증 제출서류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 소유현황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 ②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추가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 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 표준액 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④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①,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 이택스, 위택스 ④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 소유현황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자치단체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 부동산 소유에 의한 재산세가 과세되지 않았음을 증빙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본인	• 기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감대조 확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거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본인	•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배우자	• 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 및 부양가족에 포함 시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하는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본인	• 청약홈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장애인, 국가유공자 제외) ※ 인터넷 청약의 경우 미제출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군복무기간(10년 이상) 명시
	○		장애인등록증	본인 및 세대원	• 청약시 최하층 우선배정을 신청하신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분이 장애인(장애인등록증)인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가점제, 예비입주자)	○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본인
○			출입국사실증명원(상세)	피부양 직계 존·비속	• 직계 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기록대조일을 해당 부양가족의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b>&lt;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gt;</b> * 만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피부양 직계 존·비속	• 피부양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3년 이상의 과거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및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발급”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또는 손자녀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공개하여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li> <li>※ 본인 및 배우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만18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li> <li>※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li> </ul>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자격확인 &gt; 순위확인서 발급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gt;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청구 방문 &gt;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li> </ul>
	○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li> <li>* (청약홈) 청약홈 &gt; 청약소통방 &gt; APT당첨사실 조회</li> </ul>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li> <li>※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li> </ul>
	○	위임장	청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li> </ul>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포함) 등</li> <li>-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li> <li>-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li> </ul>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민원회신, 건축물대장 말소신청서 등</li> <li>"소형·저가주택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건축물대장등본,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li> <li>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미분양 주택 확인 서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li> </ul>
	○	기타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 서류</li> </ul>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해당 서류상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된 상세로 발급 요망.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VIII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장 소	문의전화
당첨자 계약체결 (특별공급 당첨자, 일반공급 당첨자)	24.07.01.(월) ~ 24.07.03.(수) (10:00 ~ 16:00) 3일간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견본주택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9번지, 2층)	☎ 1544-4414

※ 공급계약 체결 방법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일정 및 변경사항 등에 대한 공지사항은 추후 '양정 롯데캐슬 프론티엘'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관계법령에 따라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계약금 수납 불가)

※ 아래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1차 계약금)	KB국민은행	131501-04-463870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1)
분양대금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	KB국민은행	131501-04-463883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외1)

- ※ 상기계좌는 전체 분양대금 관리계좌로서, 세대별 분양대금(가상계좌)은 계약시 별도 생성되어 고지될 예정이니, 납부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 지정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2차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관리계좌와 공급계약서에 기재된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형태의 입금 및 납부도 이를 정당한 납부로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하여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분양대금 계약금 납부계좌는 발코니확장 공사대금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납부계좌와 상이 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시 구비사항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확인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 계약시	○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본인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현장수납 불가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 발급용에 한함(용도: 아파트 계약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인(위임인) 계약 불가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해당자	※ 사전 자격확인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추가 서류	해당자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서식 게시
	○		전자수입인지	본인	• 해당 세액구간의 수입인지 세액의 50% 해당하는 금액의 전자수입인지 원본 제출 - 전자수입인지 납부증명서 (수입인지 세액 :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 2만원 /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 4만원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구매 및 납부증명서 출력 or 우체국 및 시중은행에서 구매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대리 신청 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불가), ‘본인 발급용’에 한함 ※ 단,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위임장 견본주택에 비치
	○		대리인신분증, 인장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1년 이후 발급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 추가 포함) 등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체결 시 대리인 방문이 불가하며 본인이 방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며 현장수납은 불가)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재공고 후 인터넷 청약방법으로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인지세 납부 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계약체결 전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사업주체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아파트 발코니 확장 계약서, 선택옵션(유상) 계약서 각각은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 제1조 제2항에 의거 '시공사'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각각을 연대하여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분실했을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세액(균등 납부)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시공사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분양계약자 부담액	1만원	2만원	3만5천원	7만5천원	17만5천원

※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선택옵션(유상) 계약서의 전자수입인지를 별도로 각각 구매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계약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며,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거래 가격(분양대금+프리미엄)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전자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우체국, 은행) 또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www.e-revenuestamp.or.kr](http://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결제원(☎1577-5500)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직접출력 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발행 불가)
- 인지세 납부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 계약, 발코니 계약, 선택옵션(유상) 계약의 계약일은 각각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내에 소명자료를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7일) 내에 서류 확인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련 법령 등의 처리 및 검증으로 인한 당첨 및 계약취소 확인**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자 또는 부정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점제를 적용받아 당첨된 경우
  - ④ 위장전입,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 요청서 (당사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본 아파트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 등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견본주택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계약자의 변심,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시 계약자가 선택하는 마감재 선택사항 및 추가옵션계약은 변경이 불가하며,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해제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동안 다른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 이하 이 항에서 같음)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제출한 청약신청 서류 검토 결과, 가점점수가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한 경우에만 예비입주자 자격이 유지될 수 있으며, 다음 순위 예비입주자 점수보다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 계약자 중도금대출 안내

- 계약자는 분양대금의 **총 10% 완납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 대출을 통해 중도금을 납입할 수 있으나, 중도금 대출 관련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정책(중도금 대출의 제한 등), 대출기관의 규제 등으로 인해 대출 알선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약자는 상기 분양대금(중도금 및 미납대금, 연체료 포함)을 납부일정에 따라 계약자의 부담으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 알선 불가 및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제1·2금융권 및 기타 대출방식 포함), 대출금리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 사업주체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사유(보증제한, 신용불량 등)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대출 알선이 불가하거나 개인별 대출축소·대출불가 등의 사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없으며, 계약자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며 이와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여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시 본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무이자”** 조건으로 **전체 공급대금의 중도금 60% 범위 내에서 시행할 예정**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와 시공사가 대납**하되,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중도금 및 잔금의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 보증수수료, 기타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가 기인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아파트, 발코니확장비 및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등에 대한 공급대금 및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증 발급일 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중 빠른날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납부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대출 관련 세부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관련정책, 대출상품의 종류 및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 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 및 관계자는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의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 (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중도금 대출 최초 신청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제시한 중도금 대출금리 등의 조건으로 대출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후 중도금 대출금리 조건(대출금리 인상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및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ol> </li> </ol> </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li> </ul>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li> <li>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li> <li>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li> <li>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li> </ol> </li> <li>12.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임차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임차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의 각 호 및 제3조제1항의 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취득(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li> <li>나. 임차주택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실제 거래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 이하(수도권은 3억원 이하)이며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li> <li>다. 임차주택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임차주택에 거주한 경우</li> </ol> </li> </ol>

**X**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 발코니 확장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발코니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체결시	입주시
59A (59A-1,59A-2)	14,000,000	1,400,000	12,600,000
59B	15,000,000	1,500,000	13,500,000
84A (84A-1,84A-2)	17,000,000	1,700,000	15,300,000
84B (84B-1,84B-2)	16,000,000	1,600,000	14,400,000
110	18,000,000	1,800,000	16,200,000

**■ 발코니 확장 금액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금액 (계약금)	KB국민은행	465101-01-305553	롯데건설(주)
발코니 확장 금액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305566	롯데건설(주)

- ※ 상기 계좌는 발코니 확장금액 납부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발코니 확장 공사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자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2010.2.18. 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에는 취득세 등 체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등은 제외)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자재 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일정 기간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 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가 시공사와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시공(발코니 확장, 가변형 칸막이 제거 등)하는 경우,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등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한 부위에 발생한 하자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주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마감재 오염 또는 훼손, 결로, 단열, 주변 세대 피해 등)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는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는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을 초래할 경우, 이에 따른 법 책임은 시행자, 시공자와 무관하며,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고,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공간 활용도가 저하되거나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고,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건축마감(단열재 위치, 벽체 두께, 천장고 높이 및 바닥마감 두께 등), 전기설비(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개수, 타입, 배치 등), 기계설비(환기구, 스프링클러, 에어컨 매립배관) 등이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창호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 비확장세대의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장 돌출, 벽체 돌출, 우물천장 디자인 변경, 조명 위치 변경, 일부 배관노출 등의 마감 상태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선택 시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발코니 확장 세대와 인접 시, 발코니 비확장 부위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동일주택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폭 및 깊이, 벽체의 두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필히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라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부위의 경우 외부창은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측 벽체 및 일부 천장에 결로방지를 위해 추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 되어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확장부위(발코니 창호, 유리창 표면, 벽체 등)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 등이 주택형별 또는 각 호별로 다를 수 있으며, 구조 및 기능 만족을 위하여 마감 재료의 특성과 규칙이 다를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 확장 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 체결 이후 관계 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 포함 품목은 주택형별 또는 각호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 등의 형태 및 사양, 제조사와 모델, 색상, 디자인 등은 기능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분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으로 인하여 추가로 생기는 침실 또는 거실 부분에 가구 배치로 인하여 창문을 통하여 어린이들이 떨어지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 가구 배치 시 창문과 이격 또는 난간 높이 확보를 통하여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 창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션)

1) 시스템 에어컨 (일반형)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구분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제조사)	
				계약체결시	입주시		
59A (59A-1,59A-2)	기본	거실+침실1 (2개소)	3,400,000	340,000	3,060,000	LG전자	
	전실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5,500,000	550,000	4,950,000		
59B	기본	거실+침실1 (2개소)	3,400,000	340,000	3,060,000		
	전실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5,500,000	550,000	4,950,000		
84A (84A-1,84A-2)	기본	거실+주방+침실1 (3개소)	4,300,000	430,000	3,870,000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개소)	6,800,000	680,000	6,120,000		
84B (84B-1,84B-2)	기본	거실+주방+침실1 (3개소)	4,300,000	430,000	3,870,000		
	전실 (택1)	알파룸 특화 1 선택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개소)	6,800,000	680,000		6,120,000
		알파룸 특화 미선택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개소)	7,700,000	770,000		6,930,000
110	기본	거실+주방+침실1 (3개소)	4,500,000	450,000	4,050,000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개소)	8,300,000	830,000	7,470,000		

2) 시스템 에어컨 (고급형)

(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약식표기)	구분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제조사)	
				계약체결시	입주시		
59A (59A-1,59A-2)	기본	거실+침실1 (2개소)	3,900,000	390,000	3,510,000	LG전자	
	전실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6,200,000	620,000	5,580,000		
59B	기본	거실+침실1 (2개소)	3,900,000	390,000	3,510,000		
	전실	거실+침실1+침실2+침실3 (4개소)	6,500,000	650,000	5,850,000		
84A (84A-1,84A-2)	기본	거실+주방+침실1 (3개소)	5,000,000	500,000	4,500,000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개소)	7,700,000	770,000	6,930,000		
84B (84B-1,84B-2)	기본	거실+주방+침실1 (3개소)	5,000,000	500,000	4,500,000		
	전실 (택1)	알파룸 특화 1 선택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5개소)	7,700,000	770,000		6,930,000
		알파룸 특화 미선택시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 (6개소)	8,700,000	870,000		7,830,000
110	기본	거실+주방+침실1 (3개소)	5,200,000	520,000	4,680,000		
	전실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침실4 (6개소)	9,500,000	950,000	8,550,000		

-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미 시공 시 에어컨 냉매 배관은 침실1, 거실에만 시공됩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신청세대는 기본제공인 매립형 냉매배관을 제외하며, 시스템에어컨 판매가는 해당 세대의 냉매배관 설치비를 감액하여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제공인 냉매매립배관 및 배관연결구는 시공되지 않으므로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의 설치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 상기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높이,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 배관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상기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 및 단열재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추후 유선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상기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3) 가전기기**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제조사 및 모델명)
			계약체결시	입주시	
전타입	식기세척기 (가구패널형)	900,000	90,000	810,000	삼성, DW60T7065SS
		1,200,000	120,000	1,080,000	LG, DUB22SB
전타입	4도어 냉장고 + 3도어 김치냉장고 + 수납특화장	6,000,000	600,000	5,400,000	냉장고(삼성, RF60B91R2AP) 김치냉장고(삼성, RQ33A74E1AP)
		6,600,000	660,000	5,940,000	냉장고(LG, M622GGB352) 김치냉장고(LG, Z332GGB151)
전타입	하이브리드 쿡탑	550,000	55,000	495,000	쿠쿠, CIHR-D302FB

-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가구/마감재 옵션**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설치 위치 및 품목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제조사 및 모델명)
				계약체결시	입주시	
59A (59A-1,59A-2)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	2,100,000	210,000	1,89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거실 스타일업_바닥형	2,300,000	230,000	2,070,000	거실, 주방, 복도 유럽산 바닥타일
	전체	조명 스타일업	3,500,000	350,000	3,15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주방, 침실 고급 직부등 / 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주방	스타일업	4,000,000	400,000	3,600,000	주방 벽, 상판 ENG / 미드웨이 선반
	욕실1	스타일업	2,600,000	260,000	2,34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및 욕조 에이프런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욕실2	스타일업	2,300,000	230,000	2,07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침실1	슬라이딩형 불박이장	4,200,000	420,000	3,780,000	
	침실3	드레스룸 특화	1,700,000	170,000	1,530,000	
59B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	2,800,000	280,000	2,520,000	거실 아트월, 복도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거실 스타일업_바닥형	2,200,000	220,000	1,980,000	거실, 주방, 복도 유럽산 바닥타일
	전체	조명 스타일업	3,500,000	350,000	3,15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주방, 침실 고급 직부등 / 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주방	스타일업	3,400,000	340,000	3,060,000	주방 벽, 상판 ENG / 미드웨이 선반
	욕실1	스타일업	2,600,000	260,000	2,34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및 욕조 에이프런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욕실2	스타일업	2,300,000	230,000	2,07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침실1	슬라이딩형 불박이장	5,600,000	560,000	5,040,000	
침실2	불박이장	900,000	90,000	810,000		
84A (84A-1,84A-2)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	2,300,000	230,000	2,07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거실 스타일업_바닥형	2,900,000	290,000	2,610,000	거실, 주방, 복도 유럽산 바닥타일
	전체	조명 스타일업	4,100,000	410,000	3,69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주방, 침실 고급 직부등 / 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주방	스타일업	4,400,000	440,000	3,960,000	주방 벽, 상판 ENG / 미드웨이 선반
	욕실1	스타일업	2,600,000	260,000	2,34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및 욕조 에이프런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욕실2	스타일업	2,300,000	230,000	2,07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침실1	슬라이딩형 불박이장	5,100,000	510,000	4,590,000	
드레스룸 특화		500,000	50,000	450,000		
침실2	불박이장	1,000,000	100,000	900,000		
84B (84B-1,84B-2)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	2,900,000	290,000	2,610,000	거실 아트월, 복도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거실 스타일업_바닥형	3,200,000	320,000	2,880,000	거실, 주방, 복도 유럽산 바닥타일

	전체	조명 스타일업	4,200,000	420,000	3,78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주방, 침실 고급 직부등 / 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주방	스타일업 1	3,900,000	390,000	3,510,000	주방 벽, 상판 ENG / 미드웨이 선반
		스타일업 2	2,900,000	290,000	2,610,000	주방 장식장
	욕실1	스타일업	2,600,000	260,000	2,34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및 욕조 에이프런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욕실2	스타일업	2,300,000	230,000	2,07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침실1	슬라이딩형 불박이장	5,200,000	520,000	4,680,000	
		드레스룸 특화	300,000	30,000	270,000	
	침실2	불박이장	1,000,000	100,000	900,000	※알파룸 특화 2 선택시, 침실2 불박이장 옵션 선택불가
	알파룸 선택형	특화 1 (팬트리형)	2,800,000	280,000	2,520,000	복도 팬트리 + 침실2 드레스룸
		특화 2 (침실2 통합형)	3,200,000	320,000	2,880,000	침실2 통합형 + 대형 불박이장
110	현관	3연동 슬라이딩 중문	1,300,000	130,000	1,170,000	
	거실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	2,900,000	290,000	2,610,000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 거실, 주방, 복도 시트판넬 및 픽처레일
		거실 스타일업_바닥형	3,600,000	360,000	3,240,000	거실, 주방, 복도 유럽산 바닥타일
	전체	조명 스타일업	4,800,000	480,000	4,320,000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 / 거실, 주방, 침실 고급 직부등 / 주방, 복도 고급 매입등
	주방	스타일업 1	4,600,000	460,000	4,140,000	주방 벽, 상판 ENG / 미드웨이 선반
		스타일업 2	2,500,000	250,000	2,250,000	주방 장식장
	욕실1	스타일업	2,600,000	260,000	2,34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및 욕조 에이프런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욕실2	스타일업	2,300,000	230,000	2,070,000	유럽산 벽 타일 / 젠다이, 하부벽 ENG / 비데 일체형 고급 양변기 / 하부장 일체형 세면기
	침실1	슬라이딩형 불박이장	5,600,000	560,000	5,040,000	
		드레스룸 특화	700,000	70,000	630,000	
침실2	불박이장	1,800,000	180,000	1,620,000		
침실4	복도 팬트리 특화	2,700,000	270,000	2,430,000		

※ 상기 추가선택 품목은 발코니 확장옵션을 선택한 세대에 한하여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은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관청으로부터 관련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 상기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선택품목 유무에 따라 천장 물딩 및 가구의 형태나 규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 불박이 가구로 가려지는 벽, 천장, 바닥은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스타일업(마감재 업그레이드) 유상옵선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 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전 확인 바랍니다.

■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 공사금액 납부 계좌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유상옵선 금액 납부계좌 (계약금)	KB국민은행	465101-01-305553	롯데건설(주)
유상옵선 금액 납부계좌 (잔금)	KB국민은행	465101-01-305566	롯데건설(주)

- ※ 상기 계좌는 추가선택 품목(유상옵선) 공사대금 계좌로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계약금 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신용카드 결제 불가)
- ※ 잔금납부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하여야 합니다.(예 : 101동 101호 홍길동 → 1010101홍길동)
- ※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 유상옵선 선택품목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였음에 동의합니다.
- ※ 상기 유상 옵선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카탈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탈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상기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등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유상옵선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 추가선택품목 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추가선택품목 공사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 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 된 것으로 합니다.(수신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XI 단지역건 및 설계관련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구 분	내 용
공통	<p><b>일반사항</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사업지의 1단지, 2단지 초등학생 배정은 양정초등학교로 배정되며, 학생배치에 관한 내용은 교육부의 급당 학생수 정책, 해당 교육행정기관의 추진 일정(시기 조정 등) 및 학생 배치여건 변화(관내 공동주택 개발, 학생 수 등)에 의해 추후 변경될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관할교육지원청 등 관할지역 교육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도로및 기반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홍보물 등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도로, 학교, 차도, 하천, 공원, 녹지 등) 조성계획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음.</li> <li>• 당 단지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어 있으며 내진진도등급 MMI - VII등급, 최대지반가속도 0.208(g)로 설계되어 있음.</li> <li>• 당 사업부지에 면한 주변 도로계획은 다음과 같음. 1단지 북측 소로2-381호선 폭 8m도로, 1단지 서측 중로3-524호선 폭 12m 도로, 1단지 남측 중로 2-30호선 폭 21m도로와 1단지 남동측 소로3-427호선 6m도로가 계획될 예정임. 그리고 1단지 동측과 2단지 서측 사이 도로의 경우 소로1-1호선 폭10m 도로가 계획되어 있음. 2단지 북측 소로 2-390호선 폭 8m도로, 2단지 동측 1-405호선 양정3구역 도시계획도로는 26m이며, 양정1구역 도로포함은 28m, 2단지 남측 소로3-428호선 6m도로가 계획될 예정임.</li> <li>• 단지 주변 도로 및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단지 남측과 동측에는 최고층수 지상34층의 양정자이더샵SK뷰 아파트단지가 위치하고 있음. 주변 단지의 경우 각 단지의 계획 및 시공에 따라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당 단지의 기반시설(도로, 옹벽, 소공원, 근린생활시설용지)등의 계획이 변경 될 수 있으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주변도로는 기부채납부지로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카탈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과 동선, 식재,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또한 착공 및 분양이후 실제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인허가청 협의 의견 및 조건에 따라 실시공시 카탈로그, 모형, CG 등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바와 그 진출입동선, 형태, 높이, 조경계획,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구역경계 내 기반시설(도로, 옹벽, 소공원, 근린생활시설용지)의 경우 발주처인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의해서 당 단지의 시공과 별개로 시공될 예정이며, 단지의 준공 및 입주 이후에도 공사가 진행될 수 있음에 유의바람</li> <li>• 당 단지의 대지 경계선 주위 개발계획(조경, 토목, 기타 구조물 등의 계획 일체)과 경사도 및 레벨 계획은 주변 환경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인해 사업시행인가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설계변경 시 개별 동의를 받지 않음.</li> </ul>
<p><b>웬스설치</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대지 경계 일부 구간에 투시형 웬스가 설치될 예정이나 대지경계 인근에 안전을 위한 웬스설치가 필요한 경우 대지경계에는 별도의 투시형 웬스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전면, 보행자 전용 출입구에는 별도의 출입 차단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음.</li> </ul>
<p><b>구역경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준공시 경계(분할) 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 될 수 있음. 이 경우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확정측량 등으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고,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등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당 단지 내 레벨이 상이하여 단차가 생기는 구간에 대해서는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카달로그 및 모형, CG등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조경석, 옹벽, 사면처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실시공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구간, 높이, 시공방법 등의 계획이 상이할 수 있음</li> </ul>
<p><b>인허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 단지는 2019년 2월 최초 사업시행인가 완료한 사업장으로, 경과규정의 적용 가능한 법적기준(친환경관련 포함)에 대해서는 최초 인허가 접수일 혹은 완료일 당시의 기준을 준수함.</li> <li>•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구조·성능·상품개선 등으로 인해 인허가 도서와 상이한 부분이 발생할 경우 분양 후 경미한 변경 등을 진행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li> <li>• 인허가 절차상의 각종 인증 및 심사를 통해 일부 계획이 변경될 수 있으며, 해당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별도로 사전고지 않음.</li> <li>• 추후 단지 조경 상품 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진행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li> <li>• 준공 시 소방관련부서 또는 기관 등의 협의에 따라 외부 조경 라인, 동선 및 단위세대 내 소방시설 설치 관련 한 변경 사항이 있을 수 있음.</li> </ul>
<p><b>마감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의 독점, 품질, 품귀, 업체의 부도,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동등 이상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마감자재목록표를 참조하시기 바람.</li> <li>• 공장생산 자재(타일,벽지,시트,인조석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 및 시방서에 의해 결정됨.</li> <li>• 천연자재(석재, 목재 등)는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로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명시된 내용에 한정함.</li> <li>• 본공사시 세대 내부 마감자재의 색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동일 모델로 설치한 경우에도 색상 및 디자인과 달리 보일 수 있음.</li> <li>• 엔지니어드스톤 및 인조대리석으로 시공되어 있는 제품은 제작특성상 제조일자에 따라 패턴과 색상, 베인이 균일하지 않아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강마루 특성상 반복되는 패턴으로 인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으며, 본공사시 유사 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음.</li> <li>• 벽체 도배 마감재는 봉투바름에 의한 부착으로 테두리와 매립박스 주위로만 접착이 됨. 그 외 부위는 들뜸으로 느껴질 수 있지만 공법상 특성이며 하자가 아님</li> </ul>
<p><b>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모형, 세대모형 등)과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조경도, 주민공동시설 및 단위세대 평면도 등)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이므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동선, 기능, 성능 개선 및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의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은 59Am<sup>2</sup>, 84Bm<sup>2</sup> 타입으로 시공되었으며, 마감재는 59A 타입은 WHITE(화이트), 84B 타입은 BEIGE(베이지)형으로 건립되어 있으므로 해당 타입을 참조하여 관람하시기 바람.</li> <li>• 미건립 타입은 모형과 인쇄물을 참고하시어 계약 전에 평면 형태 및 가구배치, 실면적, 마감재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li> <li>• 마감재는 39, 59A, 59B 타입은 WHITE형으로, 84A, 84B, 110 타입은 BEIGE형으로 시공되며 별도 선택은 불가함.</li> <li>•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 보관할 예정임.</li> <li>• 커뮤니티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됨.</li> <li>• 견본주택 및 분양 홍보물은 확장형 기준으로 제작되어 기본형 세대 선택 시 제공되지 않는 품목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현관문틀은 전시공간 조성을 위하여 임의 시공된 것으로 실제 본 공사 시공제품과 무관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현관문틀 및 문틀 외부의 견본주택 공용홀 마감은 제공품목 및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제 시공 시 적용되는 마감재의 범위는 세대 현관 문틀을 경계로 내부에 한함.</li> <li>• 견본주택, 카달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li> <li>• 카달로그 및 홈페이지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하게 표기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li> <li>•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및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람.</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달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길 바람.</li> <li>•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사업승인도서 및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되어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고 전시품은 시공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세대 시공과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li> <li>•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환기유니트, 환기디퓨저, 온도조절기, 선풍통,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수량,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모델하우스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는 모델하우스 운영을 위한 것이며 본 공사 시 소방법규에 적법하게 설치됨. 실별 설치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본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기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점검구, D/A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li> </ul>
단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공사 시, 시공여건 및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주동과 부대복리시설의 외관디자인(마감재료 및 패턴디자인, 옥상장식물, 창틀모양 등), 지하출입구, 선근, 외부 시설물 (난간디테일, DA,쓰레기보관소 등), 조경디자인(식재, 시설물, 구조물, 조경바닥패턴 등), 주차장 구조체 공법은 경미한 변경 등 인허가 절차를 통해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부위별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 및 의견에 의해 변경될 수 없음.</li> <li>• 주동의 동출입구 및 외부 저층부 3개층 높이(필로티 포함)는 지정석재 마감임.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외부 입면은 일부 지정석재 마감이며, 재료의 색상 및 디자인은 시공 중 변경될수 있음.</li> <li>• 추후 옥외광고물 심의(자문) 및 야간경관심의(자문)에 따라 조명계획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저층부 세대는 단지 주변도로, 단지 내 비상차로, 문주, 부대복리시설, 가로등, 동출입구, 식재, 차량출입구 및 진출입 차량의 전조등에 의해 소음, 조망 등 사생활 침해 및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환경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입주 시 단지 바닥마감, 조경, 창호형태, 입면 장식몰딩 등으로 인하여 사다리차 이용 시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1층에서 E/V를 통한 이삿짐 운반을 할 수 있음. 당 단지는 확장시 거실과 침실의 창호가 유리간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임으로 확장세대 거실과 침실로의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음.</li> <li>• 차량 출입구를 제외한 단지 내 도로는 비상차로로 입주 후 단지운영에 따라 우편물 차량, 이사짐, 택배, 구급 차량 등이 단지내 비상차량 동선을 통해 진입할 수 있으며, 일부 단지 내 도로는 경사에 따라 장애인의 통행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li> <li>• 우편물보관함은 지상 1층 각 동 출입구 내부 공용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창고는 지하층 동 하부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li> <li>•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거동 옥상의 철제난간 설치영역은 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거동 필로티 진출입구간에 낙하물 방지 시설물이 추가 될 수 있음.</li> <li>• 동 하부 지하1층 제연환룸이 계획됨으로 주동에 인접하여 제연환룸 급기 DA가 설치되고 이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에 소음 및 진동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추후 실시공시 환룸의 기능상의 이유로 DA가 일부 추가 또는 이동될 수 있음. 각종 1층에는 DA(제연DA 포함), 지하주차장 채광창, 주차장 급배기그릴 등 저층부 세대와 인접하여 설치되어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가스, 상하수도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li> <li>•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가 각 단지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가스 정압실의 크기 및 위치는 부산도시가스공사 등 관계청의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외기에 노출되는 일부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전기 비용은 공용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li> <li>• 단지 내 조경식재, 수경시설, 야간조명 및 홈네트워킹설비 등의 관리에 따른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수경시설은 수질관리를 위하여 상수가 연결될 예정이며 수질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고, 수경시설 가동에 따른 관리비가 발생할 수 있고 이에 관련한 내용은 입주후 관리규약에 따름.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근린생활시설 전후면에 근린생활시설 출입을 위한 계단 및 경사로가 추가 조성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행자 동선에 간섭이 생길 수 있음.</li> <li>• 단지 내 도로 및 보행로의 경사로, 선형, 폭, 조경 및 식재계획, 포장재, 포장패턴, 외부시설물은 본공사 시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해 위치, 디자인, 구조, 높이, 재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가 침해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옹벽, 조경식재, 마운딩, 플랜터 등 구조물 구성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에 프라이버시, 조망, 일조에 침해가 있을 수 있음. 특히, 식재기반조성 및 미관개선을 위해 분양홍보물과 상이한 구조물(플랜터, 마운딩등)이 계획될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일부 저층세대에 일조,조망 침해가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소방안전매트 설치가 권장될 경우 해당 구간에 식재가 제한되어(교목 및 관목 식재 불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 및 가로경관에 변경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휴게공간(포켓정원 등), 주민공동시설 및 대지 내 공지, 수경시설, 소방도로, 보행가로변에 인접한 세대에는 프라이버시 침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종 필로티 내부 혹은 주출입구 인근에 자전거 보관소가 인접하게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 조망권 및 소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현장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을 위해 위치,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 자전거보관함 설치 대수 충족 및 공간 활용성을 고려하여 일부 구간은 2개층형의 자전거보관함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일부 노약자 사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li> <li>• 단지 내 수경시설의 개수, 위치, 형태 및 규모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수경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단지 내 수경시설에는 수질 정화를 위한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나 음용할 수 없으며, 관상용 시설의 경우 별도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음.</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상부에는 생태환경 개선을 위한 옥상녹화나 세대 미관 개선을 위한 인조잔디가 설치될 수 있으며 거주자 이용 불가한 공간이며, 출입을 위한 유지관리용 출입문 또는 옥외사다리 설치 등 현장 여건에 따라서 디자인 및 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이로 인해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 소음, 도로로 인한 시야간섭 등의 환경권 및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음.</li> <li>• 단지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8개소(근린생활시설용 2개소 별도 설치 예정)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현장 여건 및 미관, 사용성 개선, 외부 조경공간의 배치 개선시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 크기 및 디자인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공동주택용 쓰레기분리수거함은 각 동별로 설치되나 동별 쓰레기분리수거함이 인접할 경우 통합하여 설치될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장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각 동출입구와 쓰레기분리수거장의 거리는 각각 상이함.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근린생활시설 주차면 또는 인근 건축데크 하부 등 실내에 설치되어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 및 규모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해 질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단지 출입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비상차량 주출입구(1단지 서측,2단지 동측 각각1개소 총2개소 문주설치)는 총 5개소가 설치되며 106동과 105동, 203동과 204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는 총 3개소(1단지 서측 101동,106동 사이, 1단지 북측 103동,104동 사이,2단지 동측 202동,203동 사이)가 설치됨. 해당 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와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은 1단지의 경우 101동 데크 하부 지상부에 위치하고 있고, 2단지의 경우 202동 데크 하부 지상부에 위치함에 따라 주차공간 및 진출입 동선에 인접한 동의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은 데크 하부 지하부에 위치하며 주차공간이 다소 협소하여, 주차시 유의 해야 함.</li> <li>• 단지 인근에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이 조성됨으로 1단지 104동 저층세대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은 단지사이 10m 도로의 1단지 비상차로입구에 면한 경비실 옆에 계획될 예정이며 인허가 과정의 관계기관 협의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 및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어린이 통학차량 주정차 공간의 경우 별도의 냉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음.</li> <li>• 단지 비상차로 출입구 중 일부 구간 포장이 불력으로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차량 진입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필로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필로티 계획은 각 동의 일부(101동 1,5호라인 / 102동 2호라인 / 104동 2,3호라인 / 105동 4호라인 / 106동 1,5호라인 / 201동 2,3호라인 / 202동 3,4호라인 / 203동 1,2호라인)에 필로티가 계획되어 있으며, 필로티의 내부 계획 및 마감 높이는 상이할 수 있음. 필로티가 계획된 동은 주동출입구 위치에 계획되어 있으며 주동 출입구의 내부 계획 및 높이는 코어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각동 필로티 내부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됨에 따라 일부 통행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저층 일부세대 소음 및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또한 설비배관 시공 등으로 인하여 천정에 단차가 발생 가능함.</li> </ul>
<p style="text-align: center;"><b>아파트 주동</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1동 북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1동 남서측으로 어린이집 및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 101동 서측으로 어린이집 인근 1개소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호라인과 5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1,2호라인 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
- 101동 북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데크 하부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빛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1동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매연,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북측으로 데크하부 주민공동시설과 연계된 지상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북동측으로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동측으로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이 계획된 중앙광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북동측으로 1호라인 인접 1개소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2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2동 1호라인 북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
- 102동 서측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매연,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빛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북측으로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동남측으로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이 계획된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북측 주동출입구 램프 근처에 외부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인근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3동 2호라인 북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
- 104동 북측으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남서측으로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이 계획된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5호라인 남측으로 외부 경비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서측으로 주민운동시설(배드민턴장) 및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2,3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4동 1,2호라인 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
- 105동 북동측으로 수경시설 및 휴게공간이 계획된 중앙광장과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북측으로 1호라인 인접 2개소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고, 2호라인 인접 1개소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4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남동, 남측 및 남서측으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5동 4,5호라인 남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
- 105동 5호라인 1층은 경로당이 계획되어 인근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북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북측으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서측으로 하부 데크에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106동 서측으로 1단지 문주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6동 서측으로 데크하부 주민공동시설과 연계된 지상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6동 1호라인과 5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106동 3,4호라인 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li> <li>• 201동 북측으로 휴게공간과 어린이놀이터 및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1동 북서측으로 데크하부 주민공동시설과 연계된 지상용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1동 북동측으로 주민운동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1동 2,3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1동 4호라인 1층은 경로당이 계획되어 인근 저층세대에 소음, 냄새,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1동 4호라인 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li> <li>• 202동 북측으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2동 동측 데크 하부는 2단지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빗공해,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2동 북동측으로 5호라인 인접 1개소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2동 3,4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2동 2호라인 서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li> <li>• 202동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이 데크 하부에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빗공해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2동 북측으로 근린생활시설(상가)의 부설주차장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진출입 차량의 운행 및 전조등에 의해 소음, 냄새, 매연, 조망, 야간조명에 의한 눈부심 등의 빗공해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3동 동측으로 휴게공간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3동 남서측으로 어린이놀이터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3동 동측으로 단지 문주가 설치되어 이에 따른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3동 1,2호라인 1층은 필로티 구조로 내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동진입공간으로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3동 남측으로 1호라인 인접 1개소 드라이에어리어(DA)가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03동 1호라인 북동측으로 쓰레기분리수거장이 계획되어있어, 일부 저층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매연, 조망, 눈부심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쓰레기분리수거함의 동별 출입구와 쓰레기 분리수거장 사이 거리는 동별로 각각 상이하며, 같은 동 내에서도 호라인에 따라 거리가 상이함.</li> <li>• 주방배기는 세대별 직접배기방식으로 외부에 루버(배기캡)이 설치됨.(단, 건축평면구조상 직접배기방식이 불가능한 평형은 공동배기방식으로 타평형과 배기성능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가스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음.</li> <li>• 가스배관 설치 계획에 따라 가스배관이 외부에 설치될 수도 있음.</li> </ul>
주동 엘리베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코어별 엘리베이터 계획은 인가도서 계획에 따라 시공될 예정이며 2호조합의 동은 엘리베이터 1대, 3호조합의 동은 엘리베이터 2대가 설치됨.</li> <li>• 비상용 승강기 전실에 대한 제연설비는 스모크타워방식으로 시공될 예정이며 급기맴퍼가 전실 벽체에 설치됨.</li> </ul>
무인택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무인택배시스템은 지하주차장 차량출입층에서 각 주동의 동출입구 인근에 설치되며, 각 동별로 위치 및 규모는 상이할 수 있음.</li> </ul>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주차장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지하진입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지하주차장 이용시 택배차량의 정하차로 인해 일부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 외부인 출입통제를 위한 차단기 설치로 입출차시 대기시간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층별 각 주동의 접근 및 주차 진출입구, 램프의 위치, 부대시설 및 기계전기실 등 관련 공간 계획으로 인해 각 주동별로 주차장 이용에 거리와 동선의 불편함이 따를 수 있으며 계약전 필요시 인허가 도서를 확인하기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단지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의 경우 추후 주차관제를 위한 경비실이 신설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지하층 연면적,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서의 각 동 출입구는 지하1~3층 모두 연결되어 있으나, 주차구획에서 엘리베이터홀까지의 거리는 각 동별로 상이하오니 계약전 인허가 도서를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에서의 각 동 출입구의 입면디자인은 주동형태 및 전면 주차구획에 따라 상이하오니 유의바람.</li> <li>• 지하주차장 주차공간의 일반주차 폭 2.4m, 확장주차 폭 2.5m, 경형주차 폭 2.0m로 계획되었으나 시공오차에 따라 폭이 변동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의 배수 트렌치는 일부 구간에 물이 고일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은 밀폐된 공간으로 환기 부족시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음.</li> <li>• 주차대수 확보를 위하여 기둥간격이 일부 일정하지 않으므로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되어 승하차시 불편할 수 있음.</li> <li>• 발전기실/ 전기실/ 저수조 등 각종 기전시설 공간이 지하에 계획되어 있으며, 이와 인접한 인접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을 제기할수 없음.</li> <li>•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서 106동은 주차장내 수직이동을 위한 직선램프가 연결해 있고 이로인해 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바람.</li> <li>• 근린생활시설용 주차장은 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별도로 계획되어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는 일부 동 지하 인근 급기, 배기용 환이 설치되어 있어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지하주차장에는 동지하 E/V홀 냉난방용 실외기가 노출 설치되며, 실외기 주변으로 소음 또는 열기가 발생할 수 있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부대복리 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커뮤니티 등의 운영방안 등에 대해서는 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 관리됨.</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추후 실공사 과정에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일체는 동선, 기능, 성능개선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기관 협의 등에 의해 본 공사시 내외부 디자인과 용도, 규모, 구조, 높이, 재료, 창호사양 및 규격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li> <li>•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추후 별도로 관리되기 위해 신설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 및 각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실로 인해 인접한 저층 일부 세대의 조망권, 일조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단, 추후 본공사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1단지 스포츠시설(피트니스클럽, GX룸(멀티룸), 실내골프클럽, 탁구장, 샤워/탈의실 등)이 106동 남측 하부 지하 2층과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접근을 위한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별도로 설치됨.</li> <li>• 1단지 에듀&amp;패밀리시설(북카페,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사무소, 주민회의실 등)이 102동~104동 사이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지상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별도로 설치됨.</li> <li>• 시니어클럽(경로당)이 105동 지상 1층에 별도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어린이집이 101동 남서측 지상 1층에 별도로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단지 스포츠시설(피트니스클럽, 샤워/탈의실 등)이 201동 하부 지하1층에 설치되며, 지상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및 계단이 별도로 설치됨.</li> <li>• 2단지 맘&amp;키즈카페, 관리사무소가 204동 북동측 별도로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세대에 소음,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2단지 시니어클럽(경로당)이 201동 지상 1층에 설치되며, 지하주차장과 연결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고, 이로 인해 인접한 저층세대에 소음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각 부대복리시설의 실외기는 별도구획공간 또는 지붕, 지상돌출구간, 계단 하부와 같은 내·외부에 설치되고,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인접한 세대와 보행자에게 소음 및 진동, 펜 가동에 따른 바람이 전달되거나 조망권 침해 등 환경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추후 본공사 시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li> <li>• 경비실, 관리사무소, 시니어클럽(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 관리는 입주인이 자체적으로 수행하여야 함.</li> <li>• 경비실, 관리사무소, 시니어클럽(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의 이동식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li> <li>• 시니어클럽(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에 현관장 및 주방장이 제공되며, 바닥난방과 천장형 에어컨이 설치됨.</li> <li>• 작은도서관의 도서(1,000권) 및 가구류, 실내운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클럽)의 운동장비(소모성 또는 개인장구류 제외) 및 탈의실 락커류는 제공되며, 기타 주민공동시설의 가구 및 가전, 소모 집기 및 비품은 제공되지 않음.</li> <li>• 당 단지의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및 단지 내 공용부를 입주민의 입주지원 및 하자 보수를 위해 일정기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li> </ul>

		<p>준공 후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일부 공간은 입주고객의 입주관리 및 A/S업무를 위한 입주관리사무실 및 A/S센터로 일정기간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므로, 일부 사용이 늦어질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아파트는 영유아보육법 12조 3항의 사항으로, 주택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 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 2조 제 1항 제7호에 따른 입주자들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의 운영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운영 시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외부차량이 단지 내 출입 및 임시 주차가 가능하고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운영은 관련 법규 및 관련 규정(가이드라인) 등 관할 관청에서 요청하는 기준을 따라 설치 운영될 수 있음.</li> <li>• 당 단지는 단지사이 도시계획도로에 의하여 2개의 단지로 나누어져 있으나, 하나의 사업체로 분양되고 추후 관리될 수 있도록 인허가를 진행하였으며, 각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도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로 관리 및 운영되도록 계획되었음. 단, 준공 후 입주자 협의체 구성상황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의 이용이 조정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 및 관리 방안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 등 입주자 협의체에서 결정하여 운영 및 관리 예정임.</li> </ul>
	공급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공동주택용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동별로 설치될 예정이며, 1단지의 경우 101동 1,2호라인 서측 / 102동 1호라인 서측 / 103동과 104동의 경우 겸용으로 103동 2호라인 북측 및 104동 1,2호라인 서측 / 105동 3,4,5호라인 남측 / 106동 2,3호라인 서남측에 위치함. 2단지의 경우 201동 4호라인 동측 / 202동과 203동의 경우 겸용으로 202동 3,4,5호라인 남측 및 203동 1호라인 북동측에 위치함. 이에따라 각 동의 쓰레기분리수거장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조망, 냄새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음. 이에 대한 분양시 표현된 위치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추후 외부 조정공간의 배치 개선목적으로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가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각 쓰레기분리수거함의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분양 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근린생활시설의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추후 별도로 관리되기위해 신설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건축면적, 연면적, 기타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li> <li>• 아파트 옥상부에 의장용 구조물, 안테나, 피뢰침, 경관조명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눈부심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특히 안테나는 전기통신사업법에따른 이동통신설비 구축을 위해 옥상에 설치되며 추후 이로 인한 사생활 침해 등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101동, 102동, 103동, 104동, 105동, 106동, 201동 및 204동의 옥상부에는 신재생에너지 설치기준에 준하여 태양광집광판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빛 반사등에 의한 눈부심 및 풍음등이 일부세대에 발생할 수 있음. 향후 이에대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li> <li>• 가스, 상수도, 전기 등 인프라 시설 및 연결은 관할부서 여건에 따라 변경될수 있음.</li> <li>•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지역정압기와 전력공급을 위한 한전시설물이 단지내에 설치되며 정확한 위치는 공급기관과 협의하여 시공 예정임.</li> <li>• 지하주차장, 필로티 및 외기에 노출되는 일부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열선 전기 비용은 공용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됨.</li> </ul>
	문주 및 경비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6동 서측 경비실 통합형 문주 설치에 따른 건축 면적, 지상 연면적, 기타공용면적이 추후 변경 될수 있음.</li> <li>• 104동 서측 지하1층 주차관제를 위한 경비실이 설치됨.</li> <li>• 104동 동측 지상 경비실 내부 맘스레이션이 신설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건축 면적, 지상 연면적, 기타공용면적이 변경 될수 있음.</li> <li>• 203동 동측 경비실 통합형 문주 설치에 따른 건축면적, 지상연면적, 기타공용면적이 추후 변경 될수 있음.</li> <li>• 2단지 지하1층 주차장 출입구 차량 통제실 신설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지하층 연면적, 기타 공용면적이 변경될수 있음.</li> </ul>
단위세대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위세대의 안목치수 및 발코니 면적산정 등의 법규는 기본형 평면(발코니 비확장형, 단, 단열관련 기준은 관계법령에 따라 기본형 또는 확장형으로 진행가능)을 적용하며, 입주자에게 제공되는 유무상 옵션(거실 및 복도 아트월, 주방 벽 마감, 가구, 가변벽체, 창호 옵션 등의 유사한 사항 등)으로 추가되는 마감재, 가구, 기기, 벽체 등의 두께(치수)는 안목치수 산정 시 제외하여 기본형 평면의 안목치수를 적용함. (단, 안목치수 산정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마감두께에는 벽체 바름층의 두께 등 미세한 치수(걸레받이, 천장몰딩, 벽지 등)를 포함하지 않음) 예를 들어, 거실폭의 안목치수가 4.5m일 때, 거실아트월타일, 타일 부착두께는 고려하지 않은 치수로, 석재, 타일 시공 시 실측치수는 해당자재 및 부착두께 만큼 줄어 들게 되고, 마감자재별 상이 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천장고는 H:2,300(1층 H:2,400)으로 일부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인접 세대(상하좌우) 및 동일 세대 내부 각 부위별 발코니 확장 여부에 따라 추가 단열공사로 인하여 발코니 및 침실, 기타 일부 구간의 벽체 및 천정의 일부가 돌출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의 커튼박스, 몰딩, 등박스, 걸레받이, 마감재, 가구류의 형태와 위치가 확장형 기준층 도면과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의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침실 내부로 물 넘김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된 것으로 욕실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li> <li>• 내부의 일반가구, 주방가구 및 내부 벽체 마감 등은 인허가 과정 및 하자방지,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인허가 도서 치수와 상이할 수 있음.</li> <li>•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에는 크랙 하자 방지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으며 마감재 부착디테일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 내부의 우물천장 형태, 커튼박스의 길이, 깊이 및 형태는 천장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등의 시설물 설치로 인하여 다소 축소되거나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li> <li>• 타일 및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의 줄눈의 위치는 형별, 타입별로 상이하며 본 공사 시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시공 위치 및 개소와 상이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대 내 세부 마감 디테일은 마감품질 확보를 위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선행세대로 사용될 수 있음.</li> <li>• 타입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 일체)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세대 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람.</li> <li>• 엔지니어드스톤, 인조대리석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함.</li> <li>• 발코니/욕실/현관 등 단차부위는 실 시공시 시공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출입 시 문짝에 의한 신발 걸림은 하자사유가 아님.</li> <li>• 입주시 세대 내 추가 실별가구(장롱, 불박이장 등) 및 가전 설치시 마감재별 두께 차이로 인한 내부치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필히 실측한 후 설치하여야 함.</li> <li>•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 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li> <li>• 물을 사용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li> <li>•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 수전 등은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음.</li> <li>•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종류 및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84A, 110타입(실외기실 별도)을 제외한 전 타입은 실외기실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설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는 짝수층, 홀수층 교차되게 설치되며 발코니 상부에 피난용 하향식 사다리가 노출되어 있음. 하향식 피난사다리는 1층 및 하부 필로티 세대는 설치되지 않음.</li> <li>• 욕실 배관은 층하배관으로 설치되며, 적용 위치는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당 단지는 신재생에너지 적용이 필요한 단지임으로 각 타입별 침실2, 침실3 실내루버형 집광채광 시스템이 설치될 예정이나, 침실이 북향에 면한 경우 미설치됨. 동일 세대타입이더라도 동위치에 따라 타입 내 집광채광루버가 적용되는 범위(침실수)는 상이할 수 있음으로 이에 유의바람.</li> </ul>
<p><b>제공품목</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별 기본 제공 품목(일반가구, 주방가구, 마감자재, 기기류) 및 유상 제공 품목은 상이하며, 수납공간의 크기와 마감재가 주택형 별로 상이하므로 분양홍보물, 인쇄물 및 카달로그등을 참고하시기 바람. 세대에 제공되는 가구/가전/마감 등과 관련하여 분양홍보물과 인허가 도서가 상이할 경우, 분양홍보물을 우선 기준으로 함.</li> <li>• 거실 아트월의 경우 해당 위치에 대형 타일(600*1200)이 시공되며 주택형 별 타일의 색상, 컬러, 종류 및 나누기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단열 및 벽체, 창호, 물딩 및 걸레받이, 조명류 등의 설치 위치가 상이하며 가구와 마감재의 디자인과 품목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음.</li> <li>• 현관중문 등의 유상옵션 및 세대 도어를 비롯한 샤워부스, 욕실장 등 제작제품의 경우 디자인, 세부사양, 컬러, 손잡이 사양 등이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품목 및 자재류 등은 법규 및 제규 변경, 정책 변경, 인허가, 단종, 수급 등의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li> </ul>
<p><b>가구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박이장류(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복도장, 장식장, 주방가구 등)와 접해있는 벽, 바닥, 천장에는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주방 냉장고장의 경우 확장 시 제공되는 품목이며 기본형(비확장형) 선택 시 가구가 미적용 되므로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li>• 현관 신발장, 현관 창고, 복도 팬트리, 주방가구, 각 실 불박이장, 드레스룸, 욕실장 등 수납공간의 크기, 수량 및 마감자재는 세대형 별로 상이하며 일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 불가함. (아일랜드 식탁 포함)</li> <li>• 가구의 힌지, 레일 등과 같은 하드웨어류는 본 공사 시 동등 성능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될 수 있음.</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장의 경우 온수분배기 가림판으로 인하여 수납공간이 줄어들고, 온수분배기는 본 시공시 세대별 위치와 크기가 변경 될 수 있음.</li> <li>• 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음.</li> <li>• 주방가구 상판은 자재 특성상 별도의 물덕이 없으므로 사용시 물튀김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않음.</li> <li>• 욕실 거울 및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람.</li> <li>• 인허가 과정 및 실제 시공 시 사용성 개선을 위하여 주방가구 및 수납공간의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내 목문, ABS문의 상하부면의 마감재는 부착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 시공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음.</li> <li>• 유사 이형타입의 경우, 가구의 길이 및 위치가 상이하며, 일부 설치불가 평면에는 가구가 미적용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택형 별 팬트리의 유무, 크기 및 제공 형태가 상이하오니 반드시 계약 전 포함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li> <li>• 주방가구 상하부장 뒷판의 상하부면은 마감이 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자의 사유가 되지 않음.</li> <li>• 평형별 제공되는 가구의 수량, 크기, 형태, 마감자재 및 사양 등이 상이하오니 카달로그 및 분양홍보물을 통하여 제공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람.</li> </ul>
<p><b>창호공사</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창호 디자인, 프레임사이즈, 유리두께 등의 창호 사양은 인허가 진행, 풍동실험 및 외부 입면 계획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li> <li>• 확장옵션(유상)을 선택할 경우 거실과 침실의 창호는 유리난간이 적용된 조망형 이중창(유리난간 일체형창호)이 설치되며 유리난간은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불가능 함. 또한 이중창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이 설치되는 부위만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가능하며, 유리난간이 설치되지 않는 창호는 안전상 고정되어 이동 및 개폐(슬라이딩식)가 불가능함. 유리난간대의 높이는 FL기준 H:1,300으로 일부 시공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59A, 59B, 84A, 110 타입)</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내 실외기실 루버창의 형태, 규격, 손잡이 등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내 창호는 인테리어 마감, 시스템 에어컨 등의 간섭을 고려하여 창호높이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확장 세대는 외부 창호 및 분합창이 단창으로 설치되며, 외부 유리난간이 설치될 예정임.</li> <li>• 루버창의 색상은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층별 상이할 수 있음.</li> <li>• 세대내 목창호, 여닫이 창호 및 일반가구/주방가구 문짝의 개폐방향은 수분양자의 편의를 위해 변경될 수 있음.</li> </ul>
전기/설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 시공시 욕실의 천정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단위세대 에어컨의 냉매 및 응축수 배관은 기본 타입(거실, 침실1)으로 설치되며, 유상옵션 및 시스템에어컨 세대는 제외임. (일부 중복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음)</li> <li>•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li> <li>•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li> <li>• 도시가스 배관 및 가스계량기 등은 다용도실에 설치되며, 세대 평면 구조 및 현장 시공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가 달라 질수 있음. 또한 세탁기, 건조기 2단 적재가 불가할 수 있음.</li> <li>• 냉장고 급수용 공배관은 냉장고 자리 벽면 하부에서 주방 개수대 하부장(온수분배기 근처)까지 매립배관 되며, 사용자가 별도 부속을 사용하여 급수분기하고 배관연결하여 사용하여야 함.</li> <li>• 각 층 세대 공용부 피트 내부에 급수 계량기가 설치되며, 외기에 취약한 일부 층에 동파방지열선(카바형)이 설치됨.</li> <li>•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3층까지 방범용 배관카바가 설치됨.</li> <li>• 주방 렌지후드 상부장은 주방 자동식소화기 설치공간으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li> <li>• 세대 내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홀이나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음.</li> <li>• 주방 싱크대 하부에는 세대 난방 분배기가 설치되어, 하부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어려움.</li> <li>•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의 상부장은 수납장 내부의 깊이와 형태가 변경되거나 수납공간으로 사용 불가할 수 있으며, 수납장 하부에는 가스배관 및 차단기가 설치됨.</li> <li>• 커뮤니티센터, 근린생활시설, 공용시설(경로당, 어린이집, 경비실)의 실외기 가동 시 인접세대에 소음 및 분진,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 및 미관저해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수전(욕조, 샤워, 세탁, 손빨래, 발코니), 욕실 약세사리 높이 및 위치는 본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세탁, 손빨래 수전에는 벽체 매립 수전함 마감커버가 설치될 수 있음.</li> <li>• 욕실 오배수배관은 층하배관 방식으로 시공되며 배수구 위치는 시공 여건에 따라 개소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li> <li>• 보일러 및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주방가구 하부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용 전열교환기 급배기용 디퓨저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세대 환기 장치 가동 시 운전소음이 발생하여 거실, 침실내로 전달 될 수 있으며, 각 실내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성능 개선을 위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배선기구, 조명기구, 세대단자함, 환기디퓨저 등 각종 기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개소는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 내 전시품은 디스플레이 가전, 인테리어 소품가구 및 패브릭, 연출용 조명(전시용 간접조명, 스탠드, 펜던트, 스팟조명 등)과 소품 등이 포함되며 이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음.</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헤드의 사양, 위치,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실시공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되므로 이로 인한 세대 내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수 있음. (마감형태, 천정 및 커튼박스, 창호, 가구 등)</li> <li>• 시스템에어컨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옵션행사 시점에 별도 문의 바람.</li> </ul>
발코니 및 실외기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선홍통 및 드레인의 위치와 개수는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타입별로 윗층 세대 세탁배수배관이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같은 타입이라도 동별로 건축구조상 배관길이 및 위치가 다를 수 있음.</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 인접실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닫기 및 보온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함.</li> <li>•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선홍통,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li> <li>•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환기 덕트 포함)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li> </ul>
유상옵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는 확장 시 선택 가능한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중 하나로 건립되어 있으며, 다른 옵션 선택 시 견본주택 건립세대의 우물천장, 가구, 마감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추후 소비자가 선택한 유상옵션에 따라 기본형과 우물천장, 가구, 마감 형태 및 사양 등이 상이할 수 있음.</li> <li>• 주택형 별로 우물천장의 크기가 상이하며, 환기, 에어컨, 소방배관 경로 확보로 인하여 우물천장이 전체 천장의 중앙에 위치하지 않을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사양이 변경 될 수 있음.</li> <li>• 모든 유상옵션 품목은 설치 특성상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할 수 있으며, 일정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자재 발주를 해야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예정임)</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옵션공사비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부위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불가 하며 상세한 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추가 선택품목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신제품의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이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의 동의 및 별도의 통보 없이 진행되고 주택형 별로 설치 위치 및 선택 여부가 상이함.</li> <li>• 거실 스타일업, 주방 스타일업, 욕실 스타일업과 같이 유상옵션 선택 시 설치되는 타일의 사이즈 및 나누기도는 기본제공되는 타일과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확인 바람.</li> <li>• 주방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엔지니어드스톤이 주방 벽과 상판에 적용되며, 미선택 시 주방 벽은 국산타일(300*600), 상판은 인조대리석(MMA)가 적용됨. 자재의 특성상 색상 및 패턴은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li> <li>• 견본주택은 마감 고급화 및 상품 강조를 위하여 거실 스타일업_벽부형이 적용되어 거실 아트월에 대형 외산 세라믹타일이 적용되었으며, 옵션 미선택 시 기본형 아트월 타일이 적용됨.</li> <li>• 거실 스타일업 바닥형 옵션 선택 시, 거실/주방/복도/팬트리에 외산 바닥 타일이 적용되며, 미선택 시 전실 강마루로 마감 적용됨.</li> <li>• 59A 침실3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실 내부에 시트판넬, 은경, 벽부형 시스템가구 설치되며, 가구, 마감 형태, 나누기도와 같은 사항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li> <li>• 59A 현관 중문 옵션 선택 시, 현관 복도장은 미선택 시(기본제공)와 가구의 형태가 상이함.</li> <li>• 59B의 경우, 침실3에 붙박이장(파우더형)이 기본 제공됨.</li> <li>• 84B 알파룸 특화 2 옵션 선택 시, 침실2 붙박이장(수납 강화형) 옵션은 선택 불가함.</li> <li>• 84B 알파룸 특화 1, 110 침실4 복도 팬트리 특화 옵션 선택 시, 거실 스타일업 바닥형 옵션이 복도 팬트리까지 적용됨. 옵션 미선택 시 해당 공간은 강마루로 마감 적용됨.</li> <li>• 84B 주방 스타일업 2 옵션 선택 시, 거실 스타일업 벽부형, 바닥형 유상옵션의 마감 범위가 달라지으나 금액의 변동은 없음.</li> <li>• 84A, 84B, 110 타입의 드레스룸 특화 옵션 선택 시 유리 슬라이딩도어, 시스템가구(화장대 포함)이 설치되며, 기존 화장대, 가구 도어 미설치에 따른 감소 비용은 유상옵션 금액에 포함되어 있음.</li> <li>• 조명 스타일업 옵션 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 간접조명과 주방/복도 고급 매입등, 침실 고급 직부등(직간접, 디밍 기능)이 설치되며, 세대형 별 우물천장의 크기,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조명 스타일업 옵션 미선택 시, 거실 우물천장의 마감, 몰딩의 형태 및 사양이 선택 시와 상이함.</li> <li>• 현관 중문 유상옵션 설치여부에 따라 시공 및 유지보수의 용이성을 위하여 현관 디딤판의 크기, 이음부 설치 위치 및 개수가 상이할 수 있음.</li> <li>• 빌트인 냉장고 옵션 미선택시 오픈형 냉장고장이 확장 시 설치되며, 도어는 설치되지 않으므로 상세한 사항은 견본주택 내 안내 및 분양홍보물과 옵션 계약서를 참조하시기 바람.</li> <li>•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해당 위치에 기본 수납장이 설치됨.</li> <li>• 하이브리드쿡탑 옵션 미선택 시 기본 3구 가스쿡탑이 설치됨.</li> </ul>
--	---

**XII 입주관련 안내 및 기타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청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및 숙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령 제53조의2 및 3,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및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 당사는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입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초과 단지의 경우 60일 이상으로 하며, 정확한 일정은 추후 통보 예정입니다.
  - 사전점검 진행절차 ① 사전점검 안내문 발송 → ② 입주자 현장 도착 → ③ 접수, 교육 안내 → ④ 입주자점검 및 지적사항 작성 → ⑤ 점검사항 제출 → ⑥ 보수 → ⑦ 보수사항 확인

- **입주예정일 : 2027년 3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선납할인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일까지만 적용됨. 단, 기 납입한 선납할인금액은 실입주예정일에 따라 정산함)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및 암반 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하며,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 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1단지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실내골프클럽, L-라운지, 남·여 샤워/탈의실, GX룸, 멀티룸, 탁구장, 북카페, 남·여 독서실, 다함께돌봄센터, 주민회의실), 경비실,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외부계단
- 2단지 : 어린이집, 경로당, 작은도서관, 관리사무실,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클럽, 남·여 샤워/탈의실, 맘&키즈카페), 경비실,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 계단E/V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칙」 제6조의2에 따른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 높이**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의거 주행통로의 높이는 2.3m이며, 지하진입층은 택배차량의 이동을 고려하여 메인차량 동선의 주행통로 높이는 2.7m로 계획됨.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추후 이를 사유로 해당 관청, 사업주체, 시공사 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내진설계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은 건축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내진성능을 확보한 공동주택입니다.
- 내진 성능 관련 : 본 건축물은 **건축구조기준(KBC 2016)에 따라 내진능력 (진도MMI - VII 0.208g)**으로 계획되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요 보증 내용**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 내용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92024-101-0003100 호	₩ 260,732,500,000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친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제4조 (보증사고)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함.

※ 공급계약서 체결시 주택도시보증공사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을 할 수 있으며, 이를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검토기준	검토항목	적합여부	비 고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구 분	감리회사명	감리금액 (VAT 포함)
건 축	(주)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3,615,840,800원
전 기	마인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655,120,000원
통 신, 소 방	대원포비스(주)	770,000,000원

■ 사업주체 및 시공사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회사명	양정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롯데건설(주)
법인등록번호	184171-0008622	110111-0014764
주 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연수로 32-1, 2층(양정동)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14길 29(잠원동)

## ■ 기타 유의사항

- 모든 부동산 계약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거래 당사자인 사업주체 및 계약자는 본 아파트에 대한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신고'를 합니다.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공급계약 체결시,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신고를 위임하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여야 하며, 만일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의 미제출 등 신고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과태료 부과 등 일체의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에 상관없이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항 및 제7항 규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취득자금 조달 계획 및 입주 계획서' 및 '항목별 증빙서류'를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3항에 의거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액의 100분 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외국인 토지취득신고 필수 안내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보유 신고」에 따라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아파트 대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4항에 따라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은 출입국관리소 또는 해당 관할법원에 부동산등기용 개별번호발급을 마치고 국내 부동산을 취득 및 신고하여야 합니다.
- 영리목적 외국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 거소 요건에 따라 일부 외국인은 중도금 대출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본인의 자금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를 승인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공급계약의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분양상담 및 계약 과정에서 분양 직원의 아래와 같은 행위는 시공사의 지침과 위배된 사항으로 시공사와 무관함.
  1. 프리미엄 보장, 추가 할인, 계약해제, 연체로 감면 및 이와 유사한 보장행위
  2. 계약 후 환매를 보장하는 행위
  3. 분양대금을 제외한 일체의 금전거래행위
  4. 아파트 공급계약서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별도의 개별 약정행위

■ 홈페이지(사이버 견본주택) : <https://www.lottecastle.co.kr/APT/AT00413/main/index.do>

■ 견본주택 주소 :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34-9번지, 2층

■ 견본주택 : ☎ 1544-4414

※ 본 모집공고와 분양계약서상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분양계약서를 우선합니다.

※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